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555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지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최준식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소5431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84개월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운송사업표준위 · 수탁계약(일명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어음할인료(다만 2020. 1.경부터는 명칭이 ‘선지급 수수료’로 변경되었다)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씩을 공제한 다음 남은 운송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

다. 원고는 위 84개월 중 3개월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공제한 어음할인료 합계는 1,215만 원(= 15만 원 × 81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어음할인료로 월 15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었다.

설령 공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았기에 어음할인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실제로 어음할인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가 2020. 9.경부터 C단체 여수지부의 요청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 약정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1).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어음할인료는 물론 관리비, 샤시 사용료, 주차비 등 운송대금에서 공제되는 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공제 약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제 약정은 무효사유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유효한 약정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제 약정의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9,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어음할인료 공제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공제 약정에 따라 공제한 월 15만 원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차량의 운송사업 관리업무를 대신 해 주는 대가로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등, 즉 공제 항목이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제 약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2013. 10.경 첫 화물운송비의 정산 결과를 보고 어음할인료가 공제된 것을 알게 되어 그 즉시 항의하는 등 묵시적으로도 이 사건 공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계속 어음할인료가 공제된 운송대금을 지급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제 약정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어음할인료 뿐 아니라 관리비 40만 원, 샤시 사용료 25만 원, 상조회비 3만 원, 주차비 12만 원 및 피고가 원고를 위해 대납한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어음할인료를 제외한 위 공제 항목들은 원고도 공제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2020. 1. 1.경부터 이른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자 피고는 피고 소속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E단체’와의 2020. 5. 9.자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관련 관리비명목 기사분 회의’를 통해 지입차주들과 위탁용역수수료 6%를 공제하는 안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위 수수료 6%를 대신하여

종전에 어음할인으로 명목으로 공제하던 월 15만 원을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변경하여 공제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E단체'가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상조회에 불과하여 지입차주들 전부를 위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위 수수료 공제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이상(을 제4호증의 2, 원고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석자 명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서증 첫머리에 '동의자 명단'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제 약정의 효력 유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으로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공제하였으면서도 이를 실제로는 어음할인료 이외에도 샤시 관리비, 선지급 수수료, 회사 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정, 피고가 2020. 9.경부터는 어음할인료 내지 선지급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계약자유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별다른 문제 없이 7년 가량 유지·존속되어 온 점, 피고 회사가 공제한 어음할인료 15만 원[이를 포함한 공제비용 총 합계는 월 92만 원(= 어음할인료 15만 원 + 관리비 40만 원 + 샤시 사용료 25만 원 + 주차비 12만 원)이다]은 공제 전 원고의 월 운송대금이 838만 내지 1,329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제 약정을 강제적으로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제 약정이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1) 피고가 부당하게 어음할인료를 공제하여 왔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택한다.